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

1. 관련 근거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9.13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3880(2020.9.13.)
- 다.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6968(2020.8.15.)
- 라. 교육부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-465(2020.8.19.)
- 마. 교육부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-467(2020.8.19.)
- 바.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7321(2020.8.28.)
- 사.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7320(2020.8.28.)
- 아.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7319(2020.8.28.)
- 자.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7551(2020.9.4.)

2. 지난 8.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이 9.13일 종료될 예정으로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**9.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**

3. 이에 기시행된 공문 관련근거 ‘다~바’ 는 그 조치 기간을 **9.27일까지 연장**하여 시행하고, 관련근거 ‘사~자’ 는 방역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**조정하여 9.2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**
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1). 카페

- 적용 대상 : 프랜차이즈형 커피 · 음료 · 제과제빵 · 아이스크림 · 빙수전문점
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
- 적용 기간 : **2020년 9.14.(0시 부터) ~ 9.27.(24시 까지)**
- 조치 내용
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
 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
 - 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-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2). 음식점

- 적용 대상 : 일정규모(예: 150㎡)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
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
- 적용 기간 : **2020년 9.14.(0시 부터) ~ 9.27.(24시 까지)**
- 조치 내용
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
 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
 - 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 -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3). 학원·체육시설 등

- 적용 대상 : 교습소, 중소형 학원(독서실 포함)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
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
- 적용 기간 : **2020년 9.14.(0시 부터) ~ 9.27.(24시 까지)**
- 조치 내용
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**집합제한**)
 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
 - 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 -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4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** 바라며 시

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 1부
2.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
3. 학원·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1부
4. (참고)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 비교표. 끝.

교 육 부 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 **김신혜** 학생건강정책과장 전결 2020.9.14. 조명연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7803 ((2020.9.14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14동 교육부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6814 전송 044-203-6438 / shin8352@korea.kr / 비공개